Captive(자가전속보험) 도입 및 운영 Model

2012. 05. 31.

김 준 호 / 김 은 갑

Agenda

Ⅰ. 목적

Ⅱ. Captive 운영 방안

1. Captive 시장 규모
2. Captive 운영 형태
3. 해외 캡티브 운영 사례
4. 캡티브 도입 단계별 운영 안
5. 제주도 도입 모델

Ⅲ. Captive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보험산업 측면
2. 감독기관 측면
3. 기업 측면

Ⅳ. 제주도 도입 효과

1. 제주도 경쟁력
2. 제주도 경제적 기대효과

※ 별첨 : 캡티브 이해

Ⅰ. 목적

◆ 목적

보험산업 선진화

- 보험산업 다양화
  - 규제완화를 통한 주식회사, 상호회사 이외의 다양한 보험형태 도입
- 국내보험 산업 세계화
  - 해외 진출을 통한 세계화분만 아니라 해외물건 유입을 통한 세계화 실현
- 재보험수지차 개선 효과 2,393억원 개선 효과
  - 국내 보유율 50%, 일반보험 손해율 50%인 경우(2008년 대비)

국내보험사 신시장 개척

- 해외물건 국내 유입에 다른 국내 보험시장 확대
  - 캡티브 물건은 우량하고 규모가 큼
- 국내 공제조합 등 유사보험 시장 참여 기회 마련
- 국내 우량 물건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국가 균형 발전

- 낙후된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 교두보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 금융보험업 평균 임금 전체 산업 중 1위
- 캡티브를 통한 양질의 관광산업 동반 성장
  - 이사회 및 실적 보고회 현지 개최 의무화 등

1. 캡티브 시장 규모

시장규모

- 캡티브 보험사 : 5,400여개(2009년 말)
- 주요 캡티브 설립 지역 : Bermuda(958개), Cayman Island(738개), Vermont(567개), Guernsey(368개) 등
- 연간 보험료 : 500억달러(55조원, 2009년 말)
- 세계 1,500대 대기업 중 795개(53%) 기업 캡티브 설립 운영
- 아시아 캡티브 현황 : 싱가포르 57개 캡티브 유치

※ 출처 : 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19-26호

기업별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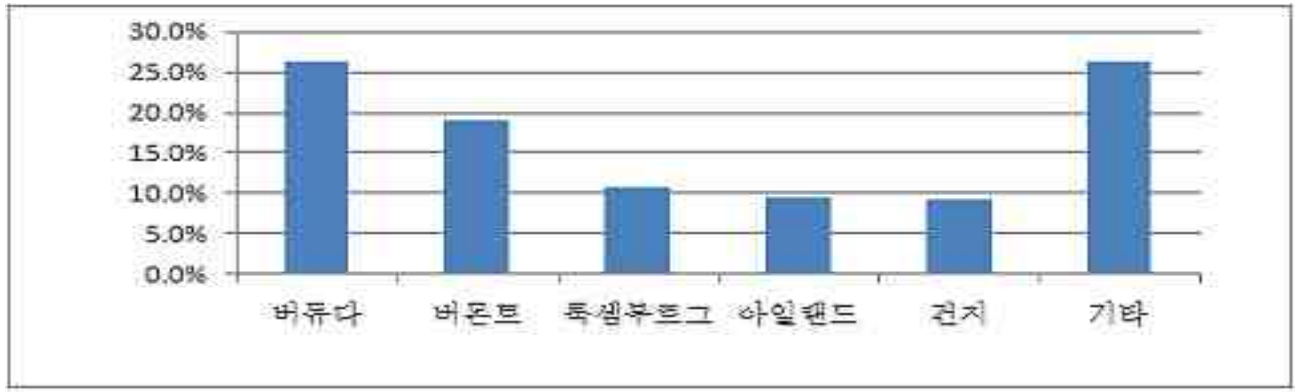

2. 캡티브 운영 형태

구분		운영형태	특징	비고
자기위험 담보	Yes	Pure Captive (순수캡티브)	▪ 전형적인 캡티브 모델 임.	
	No	Broad Captive (광의캡티브)	▪ 자기 위험 이외의 타인의 위험인수 ▪ 교환재보험 방법으로 물량 확보 가능	
소유자 수	1인	Single Captive (단독캡티브)	▪ 소유자가 1인으로 설립이 용이함. ▪ 업무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용이함	
	다수	Multi-parent / Group Captive	▪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손해율 차이에 따른 문제점 내포 ▪ 사례) 의사 등 전문인 단체, 석유화학 업종(O.I.L.) 등	
모집형태	원보험	원보험캡티브	▪ 모기업 또는 단체가 캡티브로 직접 보험 가입	보험사와 충돌가능
	재보험	재보험캡티브	▪ 원수보험회사를 통해 재보험으로 캡티브에 보험 가입	국내도입 적합모델
캡티브 간접설립		Rent-a-Captive (임대캡티브) PCC(protected cell captive)	▪ 보험료규모가 소액인 경우 ▪ 캡티브 사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 캡티브 설립 시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캡티브 운영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해외 캡티브 운영 사례

◆ 지역별 캡티브 운영 현황

- 캡티브 주요 설립 지역
  -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몬트 등
- 특징
  - 국제금융도시 기반
  - 취약한 지역 경제 구조
  - 배후의 거대 경제권 존재
- 기업별 운영현황
  - 세계1,500대 기업 중 53% 운영
  - 버뮤다, 버몬트, 룩셈부르크 등

Anguilla는 www.businessinsurance.com 2010년 기준임.

*2008 Updated stats. Source : Business Insurance News Captives 2008

**2008Updated stats. Source:http://www.captive.utah.gov/hotnews.html

***2007 Updated stats. Source : LOFSA 2007 Annual Report

Domicile	Captive Number	Percentage	비고
Bermuda*	958	18.4	영국령
Cayman Islands*	738	14.1	영국령
Vermont*	567	10.9	미국
Guernsey*	368	7.1	
Luxembourg*	262	5.0	
Barbados*	256	4.9	
Anguilla	224	4.3	영국령
Ireland*	224	4.3	
British Virgin Islands*	195	3.7	영국령
Hawaii*	163	3.1	미국
South Carolina*	158	3.0	미국
Isle of Man**	130	2.5	
Nevada*	115	2.2	미국
Arizona*	108	2.1	미국
Utah**	100	1.9	미국
Turks & Caicos**	71	1.4	영국령
Singapore**	57	1.1	
Sweden**	41	0.8	
Switzerland**	41	0.8	
District of Columbia**	40	0.8	
Labuan ***	32	0.6	말레이지아
New York**	27	0.5	미국
Netherlands**	26	0.5	
Vanuatu**	25	0.5	
Bahamas**	23	0.4	
Tatal	5,218		

◆ 미국 운영 사례

버몬트

- 1981년 특별보험업법(Special Insurance Act) 제정
- 2010년 포춘 100대 기업 중 42개사 운영, 다우지수 30개 기업 중 19개사 운영
- 연간 보험료 : 166억달러(18조원, 2008년 기준)
- 캡티브 관련 비용
  - 신청료, 면허료, 심시료, 법인 설립비 등
  - 세율 : 원보험 0.38%, 재보험 0.21%이나 최고한도액 200,000달러

하와이

- 1987년 캡티브 유치
- 관련 규정
  - 최소자본 요구액 250,000달러
  - 순보험료는 자본액의 3배 이상 될 수 없음.(보유보험에 대한 안정 장치)
- 세금 관련
  - 2천5백만불 이내 : 0.25%, 5천만불 이상 : 0.05%

◆ 버뮤다 운영 사례

버뮤다 시장규모

- 보험료 시장 규모(2007년) : 676억 달러(75조원, 캡티브 및 원수, 수재보험료 포함)
- 주요 지표(2007년) : 합산비율(84.9%), 순이익 비중(24.4%), 추정순익 165억불(18조원)

성공요인

- 미국 보험 및 재보험 수요의 발달
- 유동적인 규제 • 규율
  - 감독기관과 보험회사와의 이해 아래 규제가 성립
- 신속한 회사 설립
- 세금 혜택
  - 소득세 면세

◆ 버뮤다 운영 사례

특징

- 버뮤다 감독관(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의 버뮤다 보험업법(Bermuda Insurance Act)에 따른 규제
- feasibility study(타당성 조사서) 제출
  - 캡티브사가 feasibility study를 제출하면 3~6주 후 영업 개시 가능
  - 회사초기 자본금, 주요 임원진, 사업 구성안 등 포함
- 다중 라이센스 시스템

다중 라이센스 시스템

구분	내용	최소자본금
Class 1	Single Parent Captive	Us$ 120,000
Class 2	Single &Multi-Parent Captive (해외영업 20% 이상)	Us$ 250,000
Class 3	Class 1, 2, 4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보험회사	Us$ 1,000,000
Class 4	Open Market 원 보험사 / 재 보험사	Us$ 100,000,000
Long-Term	생명보험 전문 원 보험사 / 재 보험사	Us$ 250,000

4. Captive 도입 단계별 운영 안

◆ 적용 모델

▪ 적용 원칙
- 해외기업에는 원보험 캡티브를 허용하나 국내기업은 불허함.
- 국내 보험 영업의 형태를 보존하며 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임.

▪ 캡티브 도입 단계별 진행
- 1단계 : 해외기업만 대상함.
- 2단계 : 국내기업 및 공제조합으로 확대

<적용 모델>

	재보험캡티브		원보험캡티브		임대캡티브	비고
	단독	복수	단독	복수		
해외기업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해외기업 유치
국내기업	허용	허용	불허	불허	허용	국내 재보험 캡티브 모델
국내 공제, 조합	허용	허용	불허	불허	허용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 해외기업 대상 캡티브 홍보
  - 초기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및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기업
  - 해외 로드쇼 개최 및 초청 행사 개최
- 임대캡티브 및 캡티브 자문회사에 대한 정책 지원
  - 회사 설립 간소화 절차 지원
  - 초기 캡티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캡티브 관리회사 설립 자격 부여
  - 건전한 정책 성공을 위해 초기 캡티브 관리회사 설립 수 규제 필요

2단계

- 대상 확대
  - 국내 기업 및 국내 공제조합
  - 해외기업에 한정 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가능
- 인프라 지원 확대
  - 투자 여건 개선(투자자문사 유치 등)

5. 제주도 도입 모델

◆ 사업 모델

	모델 별 특징	기대효과
원보험 캡티브	▪ 해외기업 캡티브 유치 시 기본 모델임. ▪ 해외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의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크로스보더가 허용되지 않으면 원보험캡티브 설립이 불가하고 재보험 캡티브로 운영 됨.	▪ 해외 물건에 대한 국내 유입 효과 ▪ 캡티브 설립 물건인 경우 우량 물건으로 국내 보험산업 수익개선에 기여 ▪ 원보험 캡티브를 통한 재보험 인수로 재보험시장 확대
재보험 캡티브	▪ 해외기업 및 국내 기업에 대해 적용 가능 – 국내기업인 경우 기존 보험 환경에 변화 없음 ▪ 국내 공제조합 등 유사보험 제도권 유도 – 공제조합 자체 보유 재보험 가입 유도 ▪ 국내 보유율 확대와 재보험 수지차 개선 효과 – 국내 보험사 캡티브 구성	▪ 재보험수지차 개선 효과(20008년 기준) – 2,393억원 ▪ 보험사 영업 이익 개선 – 1,797억원

	모델 별 특징	기대효과
임대 캡티브	▪ 해외기업 대상 캡티브 유치 ▪ 보험료규모가 소액인 경우 – 20~50억원 사이 중견 기업 ▪ 캡티브 사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 한국전력 등 공사 기업 및 공제, 조합 ▪ 캡티브 설립 시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전문인 협/단체 ▪ 캡티브 운영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경우 – 캡티브 도입 가능 기업	▪ 해외기업 국내 유입 용이 ▪ 초기 캡티브 정착을 위한 기업 부담 감소
캡티브 관리회사	▪ 캡티브 설립업무 대행 및 자문 ▪ 캡티브 운영 대행 ▪ 임대캡티브와 병행 운영	▪ 종합 캡티브 관리회사 기능 수행 ▪ 업무 운영 및 대행 수수료 ▪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자문사 등 관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Ⅲ.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보험산업 측면

◆ 보험시장 세계화

해외진출 효과

- 해외에서 직접 영업을 통한 현지화도 세계화이나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세계화임.
- 캡티브를 통한 해외기업 보험유치 가능
- 사례 : 버뮤다, 싱가포르 등

경제적 기대효과

년 차	캡티브수(개)	평균보험료(억원)	국내재보험율	재 보험료(억원)	손해율	손익(억원)
1차년도	5	30	10%	15	65%	5
2차년도	10	30	15%	45	65%	16
3차년도	15	30	20%	90	65%	32
4차년도	20	30	25%	150	65%	53
5차년도	25	30	30%	225	65%	79
6차년도	30	30	35%	315	65%	110
7차년도	35	30	40%	420	65%	147
8차년도	40	30	45%	540	65%	189
9차년도	45	30	50%	675	65%	236
10차년도	50	30	50%	750	65%	263

※ 국내 재보험율은 해외기업 물건에 대한 국내 인수 추정치 이며, 손해율도 추정치 임.

III.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제도변화 대응

현황	대응 방안
▪ 보유보험료 – 매출 집계 방식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 방식으로 변화 예상 – 원수보험료 보다 보유보험료의 중요성 부각 ▪ 공동인수제도 –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시 중소형사의 시장에 대한 도태 우려 확산 – 계약자 정보 등 영업정보 보호 필요 ▪ 국내 재보험 수지차 심화	▪ 보유보험료 증가는 보유율 증가에서 해답을 찾음. ▪ 현재 국내 계약별 보유 capacity 한계 **→ 신규 물건 참여 필요** ▪ 공동인수 폐지로 인한 피해 불식 **→ 캡티브를 통한 재보험 참여 확대** ▪ 영업정보 유출의 문제점 해소 ▪ 국내 보유율 개선 효과 **→ 영업을 통한 방법이 아닌 시스템으로 개선**

Ⅲ.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재보험캡티브를 통한 국내보유율 확대 및 수익구조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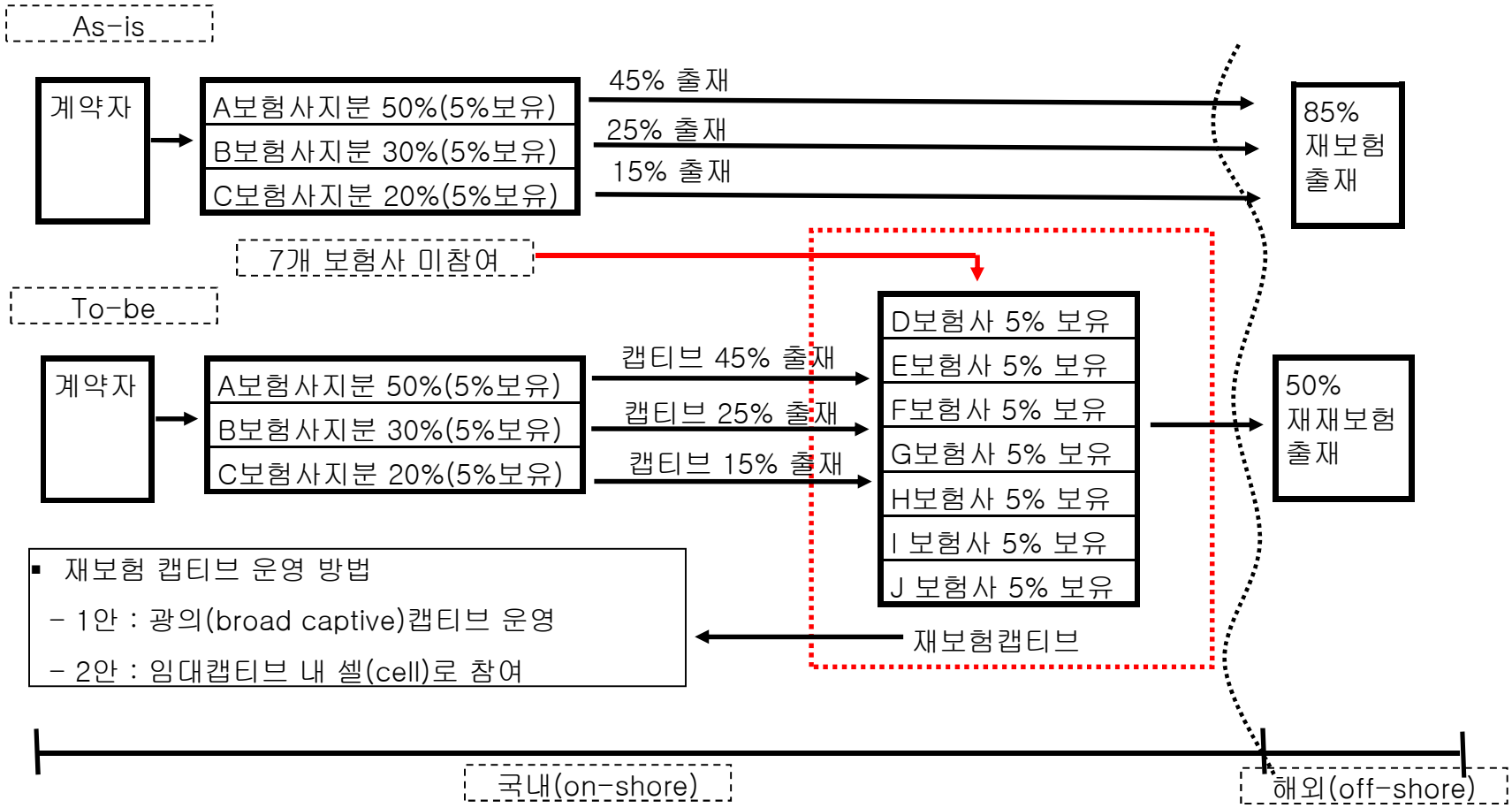

III.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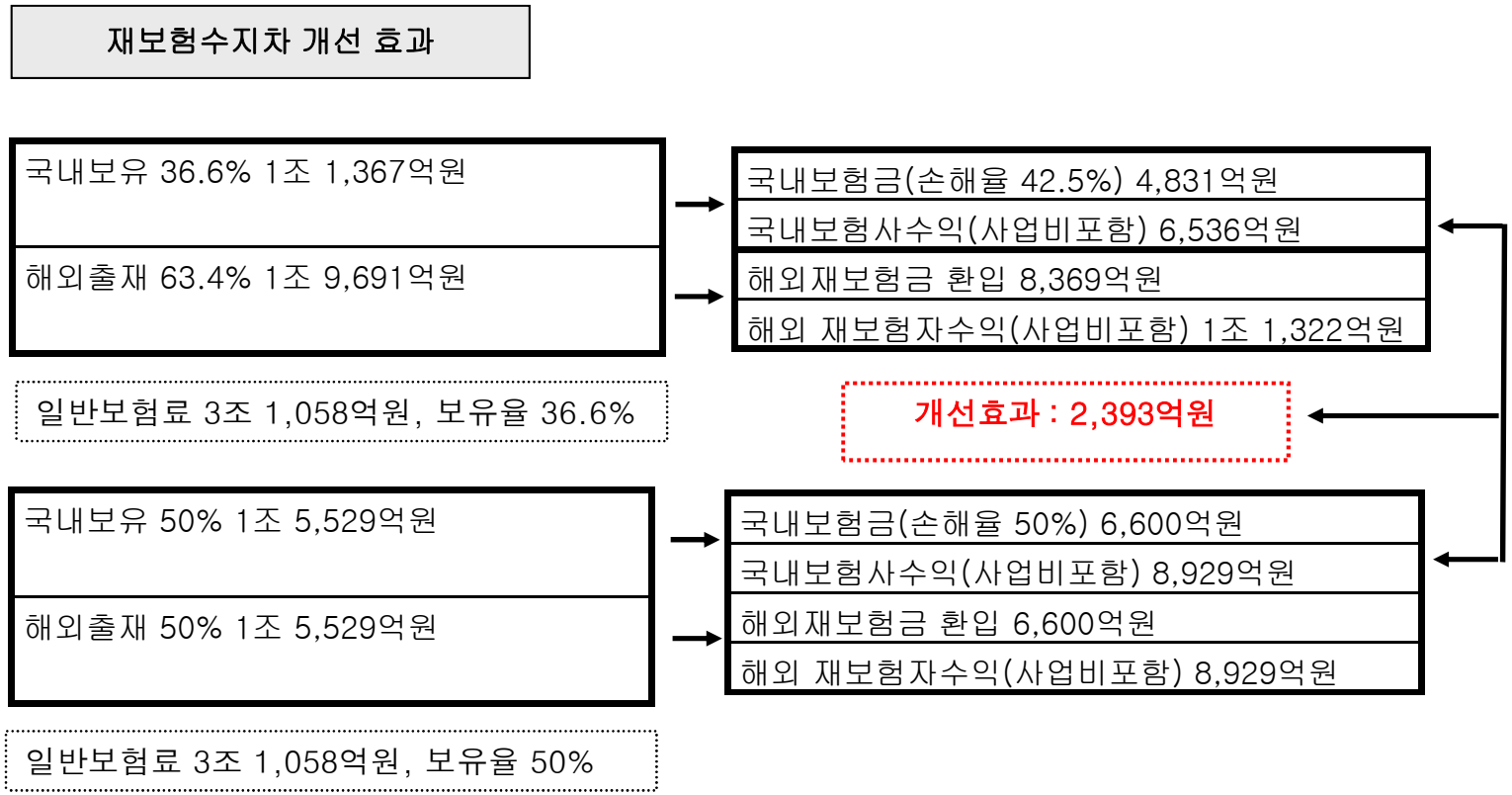

2. 감독기관 측면

보험산업 선진화

- 감독 규제 완화
- 보험제도 개선
-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 지속 가능 보험회사 육성

→

- 재보험수지차 개선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재보험수지차 개선 성과 미흡
    → 재보험수지차 개선 방안 필요
- 외형 경쟁에서 내실경쟁으로 감독기능 강화
  → 보유보험료 확대 방안

보험환경 변화

- 판매 채널 다양화
- 소비자 보호
  - 다양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소비자 요구 채널 개발
- 최근 추세
  - 재보험 수지차 개선 문제, 공동인수제도 문제 등

III.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재보험수지차 현황

회계연도	해외출재		해외수재		계
	보험료	수지차	보험료	수지차	수지차
2006	1조2,403억원	△4,979억원	1,340억원	399억원	△4,580억원
2007	1조2,168억원	△4,213억원	1,762억원	585억원	△3,628억원
2008	1조3,432억원	△3,866억원	2,588억원	1,089억원	△2,777억원
2009	1조1,479억원	△2,854억원	3,067억원	1,306억원	△1,548억원
2010	1조2,234억원	△3,483억원	3,542억원	1,419억원	△2,064억원

재보험수지차 개선 방안

- 국내보유율 확대
  - 국내 보험사 보유 확대
    - 각 보험회사들의 보유율을 최대로 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유율 확대 불가
  - 국내 미 참여 물건 참여 확대
    - 원수 참여는 경쟁 심화로 확대가 어려움
  - 재보험 참여 방법 모색
    - 국내 재보험 Pool 구성 문제점
      - 공정거래위반, WTO의 제소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간 물량차이 및 정보공유 거부감이 높음.
    - **현실적 대안**
      - **재보험 캡티브를 통한 교환재보험 실시**
      - 정보 외부 유출 금지로 거부감 감소
- 일반보험 손해율 악화
  - 보험산업 경영 악화 원인이 됨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

Ⅲ.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공동인수

공동인수

▪ **공동인수 문제점 부각**

– 금융감독원 작업반 구성

– 공동인수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로 국내보험사들의 원수 실적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임.

문제점

▪ 공동인수 폐지 시 일부 대형사에 계약 쏠림 현상 예상
→ 승자 독식의 문제 발생
→ **중소형사의 시장 도태 우려**

▪ 국내 보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해외 재보험자에게 재보험 출재 하는 경우
→ 국내 재보험 수지차 심화 현상 발생
→ **국내 국부 유출**

대안

캡티브

▪ 공동인수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결

▪ 국내 재보험 Pool 구성 시 문제점 해결

– 국내에 보험사 참여 복수캡티브를 설립하여 캡티브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캡티브에서 교환재보험을 통해 국내 보유를 극대화 시킴

▪ **공동인수 제도 개선, 중소형사 시장도태 우려 해소, 재보험수지차 개선 효과**

◆ 유사보험 관리 감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사보험(공제 조합) 규모 : 63조원

▪ 문제점

- 유사보험(공제조합) 대부분 위험 100% 보유
  → 대내외 경영 상황 악화 → 유사보험 부실화 → 해당 조합원 추가 부담 → 주무부처 국가 예산 투입 → 국가재정 악화 → 국민부담 가중

대응 방안

▪ 금융기관 관리감독 필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리 감독 필요
- 부실화 대비 자체 보유율 축소 의무화
- 보유율 변경에 따른 캡티브 설립 유도
  → 관리감독 가능

3. 기업 측면

수익구조 창출

- 년간 보험료 규모 증가로 보험료에 대한 수익 구조 방안 모색
- 기업고객들의 보험 이해도 증가
  → 원수사 보유율 및 참여 재보험자 리스트 요구 등
- 보험사 보험료 구조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

<기업의 캡티브 운영에 따른 수익구조 분석>

			10%보유	20%보유	내용
수입	보험료	순보험료	8억원	16억원	순보험료(80억원) * 보유율
		부가보험료	2억원	4억원	부가보험료(20억원) * 보유율
		재보험료수수료	4.5억원	4억원	출재보험료 * 5%
		투자수익	1억원	2억원	초기자본금 * 투자수익율(5%)
	합계		15.5억원	26억원	
지출	보험금		5억원	10억원	보유보험료 * 손해율(50%)
	사업비		2억원	4억원	보유보험료 * 사업비율(20%)
	합계		7억원	14억원	
손익			8.5억원	12억원	자본금 대비 수익율 42.5%, 30%

※ 전제 조건 : 년간보험료 100억원, 사업비율 20%, 손해율 50%, 초기자본금(보유보험료의 200%) 20억원(10%보유), 40억원(20% 보유)

III. 캡티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위험관리 체계화

- 기업들의 수년간 대형 자연재해 및 대형 사고 발생 감소
- 기업들의 위험관리 체계 선진화
- 회사별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인식 확대

보험 인식 변화

- 국내 1세대 경영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 비용
- 2,3세대 경영자들 해외 선진 경영 기법 습득
- 보험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인식

Ⅳ. 제주도 도입 효과

1. 제주도 경쟁력

◆ 경제 성장 동력 필요

-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동력 발굴 필요
- 지방정부인 경우 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임.
  - 비 제조분야, 부가가치 높은 금융 산업 분야 관심 고조
  - 고인력, 고임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음.
- 제주도의 국제 중심도시의 한 분야로 필요성 부각

◆ 제주도 추진 내용

- 2000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
- 2008년 : 제주금융포럼 설립(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 2010년 : 제주국제금융센터 신모델개발 국제학술대회 개최(PWC LONDON)
- 2011년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워크샵
- 2012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추진과제 포함

Ⅳ. 제주도 도입 효과

◆ 지리적 요건

- 접근성 : 동북아시아 지리적 중심지(인구 500만 이상 17개 도시 항공기 2시간 내)
  - 서울, 동경, 상해, 대만 등
- 거대 경제 중심지(2011년 기준 GDP(18조 달러)로 미국, EU의 70% 수준)
  - GDP : 한국(1조556십억불), 중국(11조316십억불), 일본(4조396십억불), 대만(886십억불)
  ※ 미국(15,065십억불), 유로(11,248십억불)
- 손해보험시장 비교 : 미국 + EU(1조 3,147억불) 대비 18.5% 수준
  - 동북아시아 2,439억불(일본(1,165억불), 중국(716억불), 한국(433억불), 대만(125억불))
  - 미국(6,599억불), EU(6,548억불)

◆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적

▪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주도 경제적 기대효과

◆ 보험산업 세수 비교

국내 법인세

<국내 손해보험사 법인세 비용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보험료(십억원)	23,323	25,253	27,942	32,157	36,877
법인세비용(십억원)	175	235	292	1,067	1,679
보험료대비 비율	**0.75%**	**0.93%**	**1.05%**	**3.32%**	**4.55%**
당기순이익(십억원)	564	1,147	1,197	1,067	1,678

버뮤다 세금 규모

<버뮤다 보험사 당기 순이익 및 현황> (보유보험료대비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언더라이팅 수익	8.4%	4.1%	(16.2)%	14.2%	15.1%
영업외수익(손실)	0.9%	1.7%	1.4%	1.2%	(2.1)%
세금	**1.9%**	**1.5%**	**0.7%**	**2.9%**	**3.2%**
당기 순이익	16.6%	13.8%	(4.5)%	26.3%	24.4%

세수 분석

-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 비율 차이가 적음
  - 국내 0.75%~4.55% 수준, 버뮤다 0.7%~3.2% 수준
  - 버뮤다는 면세지역이나 캡티브에 대해 면허세 등을 징구 함.
-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산업 구조와 규모, 보험산업의 수익에 좌우 됨.

Ⅳ. 제주도 도입 효과

◆ 제주도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모델

- 경제효과 = Σ해당년도 실질세금 + Σ해당년도 사업비
  ※경제모델 Yuji Maeda & Yasuhiro Sakai 일본 시가대학교 경제경영학 대학원 캡티브 운영을 통한 리스크 재무 :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 내 첫 적용 지역
- 고용효과=(총 보험료*사업비율*임금비율)/금융보험업 평균 임금

시뮬레이션 기준

- 도입 후 10년간 시뮬레이션
  - 캡티브당 년간보험료 30억원, 자산 : 보유보험료 200%
  - 손해율 50%, 사업비율 25%, 투자수익율 5%, 국내 재보험 보유율 10%~50%
  - 매년 10개 캡티브 도입 10년간 총 100개 도입
  - 국내 기업은 3년 차부터 년간 5개 캡티브 도입
- 항목별 기준
  - 순수익 = 운영수익 – 최대치{0,세금} (세율은 10% 적용)
  - 세금=실질세율 * 운영수익
  - 운영수익=(총 보험료+투자소득)–(지급보험금+사업비)
  - 총 보험료=평균보험료 * 보유율 * 캡티브 수
  - 투자소득= 해당년도의 자산 * 투자수익률
  - 사업비=총 보험료 * 사업비율
  - 지급보험금= 총 보험료 * 손해율
  - 익년 자산(=해당년도의 종료(시점)) = 해당년도 초기 자산 + 순수익

Ⅳ. 제주도 도입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 경제적 기대효과 : 1,846억원
- 관광효과 : 99억원
- 세수 발생 : 234억원
- 고용효과 : 최대 188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합계
총보유보험료	3,000	9,000	18,000	30,000	45,000	63,000	84,000	108,000	135,000	150,000	
자산	6,000	18,945	38,878	65,799	99,711	140,612	188,503	243,383	305,252	344,111	
투자수익	300	947	1,944	3,290	4,986	7,031	9,425	12,169	15,263	17,206	
지급보험금	1,500	4,500	9,000	15,000	22,500	31,500	42,000	54,000	67,500	75,000	
사업비	750	2,250	4,500	7,500	11,250	15,750	21,000	27,000	33,750	37,500	
운영수익	1,050	3,197	6,444	10,790	16,236	22,781	30,425	39,169	49,013	54,706	
세금	**105**	**320**	**644**	**1,079**	**1,624**	**2,278**	**3,043**	**3,917**	**4,901**	**5,471**	**23,381**
순수익	945	2,878	5,799	9,711	14,612	20,503	27,383	35,252	44,111	49,235	
경제효과	**855**	**2,570**	**5,144**	**8,579**	**12,874**	**18,028**	**24,043**	**30,917**	**38,651**	**42,971**	**184,631**
관광효과	**180**	**360**	**540**	**72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9,900**
합계	**1,035**	**2,930**	**5,684**	**9,299**	**13,774**	**19,108**	**25,303**	**32,357**	**40,271**	**44,771**	**194,531**
고용효과(명)	**4**	**11**	**23**	**38**	**56**	**79**	**105**	**135**	**169**	**188**	

보험업 진입형태 다양화 방안
캡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2012. 05. 31

이 기 형 금융정책실장

CONTENTS

Ⅰ 서 론

Ⅱ 국내외 보험업의 진입형태 비교

Ⅲ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Ⅳ 캡티브 종류와 미국의 주요규제

Ⅴ 결론 및 시사점

Ⅰ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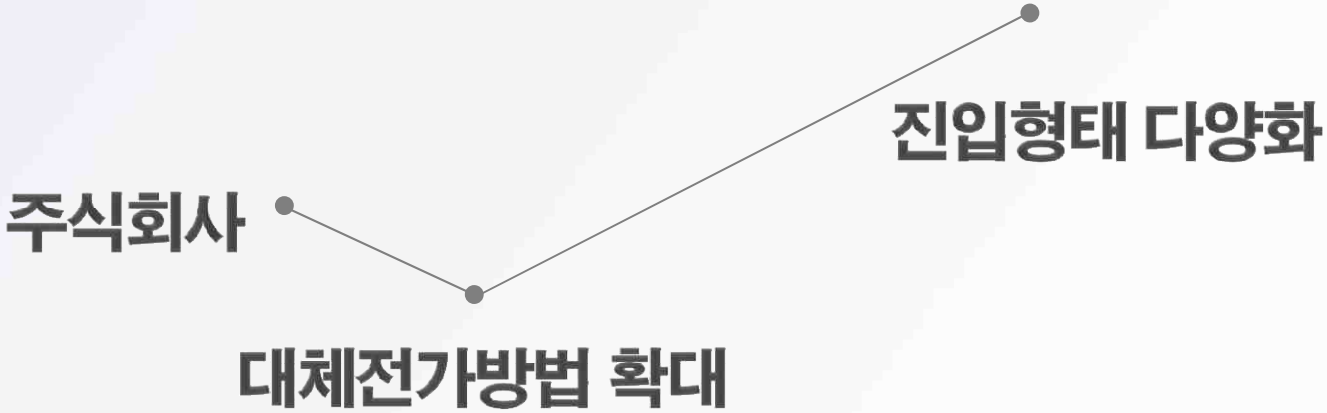

I. 서론

❖ **1963년 보험업법 제정이래 보험업의 진입형태(legal form)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규정**

- 현재까지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만 존재하였고 상호회사는 없는 상태
- 반면에 일부 보험영역(특히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다수 공제기관 신설

❖ **미국 등은 보험업의 경쟁진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리스크전가비용 때문에 대체위험전가시장(Alternative Risk Transfer) 활성화**

[ART 운영형태 현황]

구 분	ART 형태	비 고
원보험 인수 영역	캡티브보험	전세계 확산(2011년 미국과 유럽에서 51% 점유)
	상호교환보험	미국
	리스크보유 그룹	미국
	보험교환소	미국 건강보험
재보험인수영역	보험교환소	로이드, 중국, 뉴욕주
원보험+재보험 인수 영역	리스크증권화	거대재해리스크
	국영보험	거대재해리스크(자연재해 : 일본, 한국, 터키, 프랑스)

I. 서론

- 캡티브보험 : 리스크전가자가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소유기업의 보험을 인수
- 상호교환보험 : 멤버들이 출자하여 구성한 보험회사로 구성원의 위험을 상호 인수하는 형태
- 소규모보험 : 보험료규모나 인수금액을 제한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규제완화

❖ **국내 보험산업이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업의 범위를 획정하고 진입형태 다양화를 검토할 시점**

- 특히 시장실패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나 법규를 검토,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목적 달성에 부응할 필요
- 보험회사 중심에서 리스크보유자 중심의 리스크전가 보험산업으로 방향 모색 : Fortune 500 대 기업 중 65%가 캡티브보험 보유, 연간보험료 300억달러, 1,300억 달러 자산(Meed Insight 2012)

Ⅱ 국내외 보험업의 진입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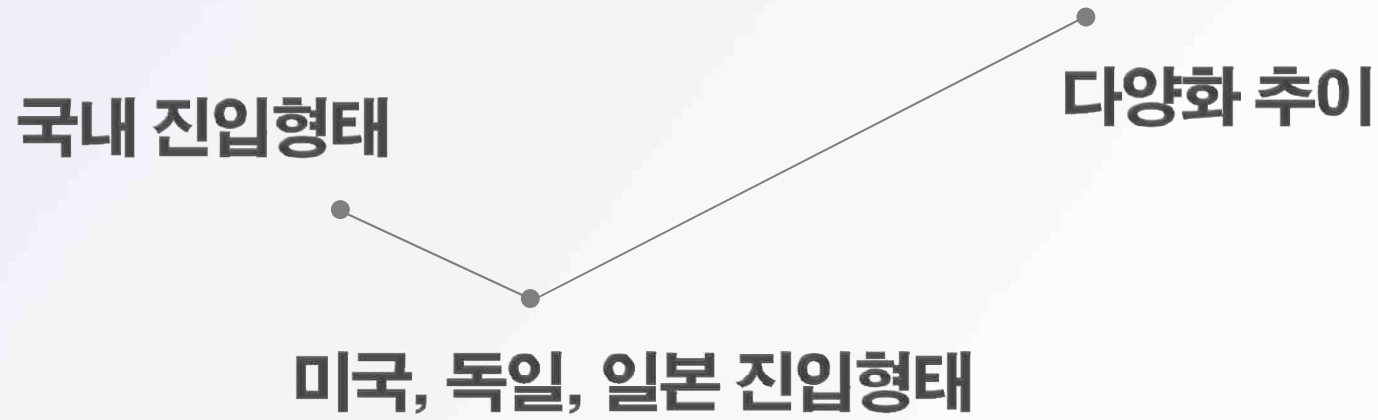

II-1. 국내 보험업의 진입형태 : 주요내용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체결과 대리를 금지(제3조), 보험회사는 금융위 허가 필요(제4조),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

보험업 구분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진입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사 지점
면허 종류	11개 보험종목 생명보험업: 생명, 연금 손해보험업: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기타 제3보험업: 상해, 질병, 간병 (겸영가능)
허가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 업무수행에 충분한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외부 위탁 가능, 2010년 시행령 개정) – 대주주 요건 : 적격성, 출자능력, 자본의 건전성
허가 절차	– 제출서류: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3년), 기초 서류(종목별 사업방법서), – 예비인가(2개월) →심사(2개월) → 본인가(2개월) : 최저 4개월, 최대 16개월 소요

II-1.1 국내 보험업의 진입형태 : 자본금 요건

❖ **자본금 요건 : 19개 종목별 자본금/잉여금 필요(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동일)**

- 87년 생보 2억, 손보 3억 → 88년 생보 100억, 손보 300억→97년 300억 → 2000년 종목별 자본금 → 통신판매회사 완화
- 외국사 지점은 30억원 , 국내 자산보유 의무

[국내 보험회사의 진입시 자본금 요건]

보험회사 허가 요건		300억원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
일부 종목만 취급 시(11개 종목)	생명보험업	생명 200억, 연금(퇴직) 200억
	손해보험업	화재 100억, 해상(항공운송) 150억, 자동차 200억, 보증 300억, 재보험 300억, 기타 50억
	제3보험업	상해 100억, 질병 100억, 간병 100억
상기 종목 중 둘 이상 취급 시		각 종목의 합계액(최대 300억)
통신판매		상기 금액의 2/3

II-2.1 주요국 보험업의 진입형태 : 미국

❖ 보험청의 허가없이 영업하는 경우 1000달러 벌금(뉴욕주 보험법 제1110조), 캡티브를 중심으로 대체위험전가시장이 크게 성장

[미국 뉴욕쥬 보험회사 진입규제의 주요내용]

보험업구분	손해보험, 생명·상해·건강보험(법률서비스), , 손생보 겸영불가
진입 형태	-주내 보험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 Reciprocal 보험 및 로이즈,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캡티브, 공제조합, 보험교환소 -타주보험사(생보 200만달러 공탁), 외국사 지점(최저자본금의 150% 예탁)
면허 종류	32개 세부 종목(주식회사의 경우 생보 250만 달러, 손보 1,160만 달러)
면허 기간	주내 보험사: 제한 없음, 타주 보험사 및 외국사: 매년 갱신
허가 절차	제출서류: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 정관(기초서류 없음) 심사기간: 없음.

II-2.2 주요국 보험업의 진입형태 : 일본

❖ **일본은 보험업 영위를 위해 금융청장관이 아닌 내각총리장관의 허가필요 (보험업법제5조)**

- 2006년 소액단기업 신설, 공제를 보험업법 적용하기 시작
- 외국사 지점 : 2억엔 공탁, 자산보유 의무(준비금, 공탁액, 자기자본)

[일본 보험업 진입규제의 주요내용]

보험업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면허의 기본보험업무범위 이외의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상해,건강)
진입 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외국사 지점
면허 종류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손생보 겸영금지)
면허 신청절차	신청서류: 정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서 등
자본금요건	영위업종/종목구분 없이 10억엔 이상, 소액단기업자 1000만엔 이상(3억엔이상 지배구조 확보 필요)

II-2.2 주요국 보험업의 진입형태 : 일본

❖ 소액단기보험업은 2006년 신설, 등록제, 1인당 가입금액 1,000만엔 이하 보험기간 2년 이내, 연간보험 50억엔 이하 사업자, 손생보 겸영허용

[일본 소액단기보험업 규제의 주요내용]

구 분		소액단기보험업	보험회사
진입 요건	회사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규제방법	등록제	면허제
	최저자본금	1000만엔	10억엔
	사업규모	연간보험료 50억엔이하	제한 없음
	취급상품	소액 1000만엔이하, 보험기간 2년, 월납식	제한 없음
행위 규제	모집방법	소액단기모집인	모집인, 대리점, 중개사, 방카
	자산운용	예.적금, 국채, 지방채로 제한	제한 없음
	건전성규제	책임준비금, 정보공시, 솔벤시규제, 업무보고 등	
보험계약자보호		영업보증금공탁	계약자보증기구

II-2.3 주요국 보험업의 진입형태 : 독일

❖ 독일은 보험법제5조에 의거 금융청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업 가능

- 주식회사, 상호회사(공제를 수용), 국영보험회사로 다양화

[독일 보험회사 진입규제의 주요내용]

보험업의 구분	생명보험업(3가지 영역으로 분류), 손해보험업 , 겸영금지(상해질병보험은 자회사형태로 겸영허용)
영위형태	주식회사(M/S 80%이상 점유), 상호보험조합, 공영보험회사
면허종류	25개 보험종목
면허 신청절차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3년간 사업비, 예측 보험료 및 보험금 산출서 기초서류(사망보험, 대체형건강보험, 의무보험에 한정) 업무를 외부 위탁한 내용 등 - 인가기간: 제한 없음.
면허 심사요건	적합한 회사형태, 규정 사업 영위, 사업계획 제출, 최저보증기금 확보 여부 (300만유로 : 상호회사는 주식회사의 ¼), 경영자의 적격성

Ⅲ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Ⅲ-1.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 **[1. 법규상의 한계점 도달] 국내 보험업법은 기업성보험 또는 특수리스크의 보험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하여 국경간 보험가입제도, 재보험자협의요율을 폭넓게 허용**

- 해외보험시장의 영향을 받고 비교적 높은 전가비용 부담 불가피, 일반손해보험 상품 혁신 미흡을 초래

[국경간보험가입제도]

- ❖ 수출입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
- ❖ **국내시장에서 3회 이상 거절, 국내 보험상품 없는 경우**
- ❖ 비대면 가입방식 한정(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재보험자협의요율 : 일반손보의 50%]

- ❖ **인가없이 국내외 재보험자 제시요율 사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 ❖ "1.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1,000톤 이상 선박보험계약, 2. 보험금액 2,000억원 초과 화재보험계약, 3. 보험금액 1,500억원 초과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유사 보험계약, 4. 참조순보험요율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5. 종합보험중 참조순보험요율 없는 보험계약, 6. 국내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상해위험 제외)

Ⅲ-2.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 **[2. 보험업 이탈 유사보험업 확대] 손해보험업은 비정상적 발전과 공제 기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 국영보험 출현**

- 특히 신설 공제기관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손해(보증) 담보를 중심으로 영위(상호보험회사 유사형태)

[공제기관 증가추이]

구 분	신설 공제수				합계
	일반공제	조합공제	정책성 공제	소계	
1950년이전	1(수협)	1	-	2	2
1960년대	1(농협)	3	-	4	6
1970년대	-	2	-	2	8
1980년대	1(신협)	7	-	8	16
1990년대	1(새마을)	7	1(건설공제)	9	25
00년-05년	-	10	1(과학기술인)	11	36
06년 이후	-	10	2(노란우산,경기사회복지)	12	48
연도 합계	4	40	4	48	-

자료 : 오영수 외 2인(2011),『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p.37에서 정리

Ⅲ-3. 국내 보험업 진입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 **[3. 보험업으로 포괄하기 위해 진입다양화 정책 필요] 보험업의 다양한 진입형태를 허용하여 보험업 범위를 일관적으로 획정, 보험업의 리스크인수자 역할을 제고 정책 추진(미국, 일본, 유럽 참조)**

- 보험회사수 이상으로 증가한 공제의 경우 사실상 캡티브 또는 상호회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부 기업의 캡티브보험 수요를 감안해 보험업 진입형태를 다양화 검토

[국내와 주요국 진입형태 다양화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위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공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공제포함)
특수형태	없음(국경간보험가입, 재보험자협의요율)	특수목적보험회사, ART(캡티브, 교환소, 리스크 보유그룹)	소액단기보험업 (공제 포괄)	공영보험회사
최근동향	인수합병, 단종보험회사 진입, 공제사업 증가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 허용, 대다수 주 캡티브 적극 허용	공제를 보험업으로 편입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공사역할 활발

Ⅳ 캡티브 종류와 미국 주요 규제

캡티브보험 종류

미국 캡티브 설립추이

버몬트 주
뉴욕주 규제

Ⅳ-1. 캡티브보험 종류

❖ 캡티브보험은 자가보험(funding for self-insured risks)으로 소유구조 형태에 따라 순수캡티브와 그룹캡티브로 구분

[캡티브보험의 종류와 설립시 고려요소]

구 분	소유구조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	
	순수(단일) 캡티브 보험	그룹캡티브 보험
특 징	하나의 경제주체가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소유, 모기업 보험을 주로 인수	다수기업이 보험사 소유하고 참여기업의 보험을 인수 (협회캡티브, 산업캡티브)
보험인수	Direct-writing Captive, Reinsurance Captive	
관리구조	Direct Control Captive, Rent a Captive(마쉬 1000개)	
설 립 시 고려요소	사업계획, 규제(설립자본 및 자기자본요구, 대출제한, 준비금, 이사회 소재), 지리적 접근성, 운영비용(경상비, 세제) 등	

Ⅳ-2.1 미국 주요규제 : 캡티브보험 설립추이

❖ 2011년 현재 전세계 캡티브는 5,745개로 매년 증가(Dow Jones 30 : 100%, FTSE 100: 82%, CAC 40 : 80% 소유)

❖ 미국지역 캡티브가 2,039개로 세계 캡티브의 35.5%를 점유

[미국의 캡티브보험 시장 점유비]

(단위 : 개사,%)

연도	전세계(비중)		미국지역(비중)		기타지역(비중)	
2007	5,119	100.0	1,415	27.6	3,704	72.4
2008	5,211	100.0	1,553	29.8	3,658	70.2
2009	5,525	100.0	1,670	30.2	3,855	69.8
2010	5,587	100.0	1,831	32.8	3,756	67.2
2011	5,745	100.0	2,039	35.5	3,706	64.5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http://www.iii.org/)자료 재작성

Ⅳ-2.1 미국 주요규제 : 캡티브보험 설립추이

❖ 버몬트주가 가장 많은 캡티브 운영(2011년 590개로 미국 캡티브보험의 29%해당), 영위보험종목은 의료사고, 상업종합, 산업재해, 환경배상 등 시장실패 영역에서 운영

[주별 캡티브 보험회사 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버몬트	567	557	560	572	590
유타	92	122	148	188	239
하와이	0	165	162	167	172
사우스캐롤라이나	158	156	161	155	159
델라웨어	0	41	49	95	150
켄터키	31	67	105	127	137
네바다	108	123	126	124	127
아리조나	94	106	99	96	97
뉴욕	44	50	47	47	50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iii.org/)자료 재작성

[미국 캡티브보험의 인수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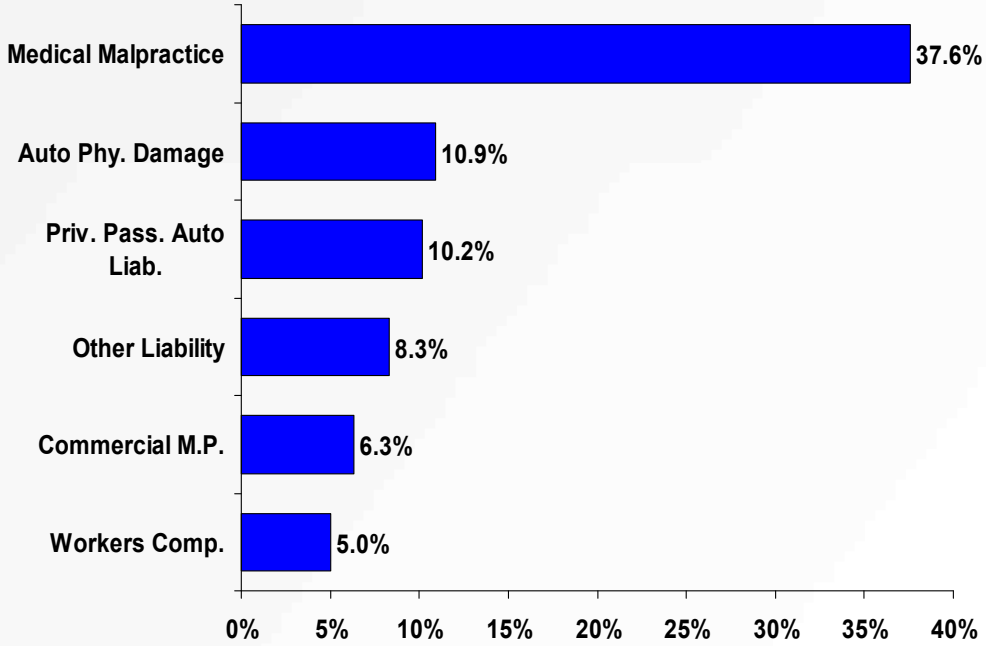

자료 :Dr. Robert P. Hartwig(2007), Mega-Trends in the World of Insurance: Impacts on Captive & Alternative Risk Transfer Markets ,p.11

Ⅳ-2.2 미국 주요 규제 : 버몬트, 뉴욕주

1. 규제 법규체계

- 캡티브보험을 별도 규제체계로 규정(뉴욕주 70조 12개 조문, 버몬트주 60조 48개 조문)

2. 허용형태

- 순수캡티브(주식, 상호), 그룹캡티브(주식, 상호, 교환보험)
- 산업캡티브 설립 사업체(industrial insured) 요건

  뉴욕주 : 최소 1억달러 이상의 순자산가치를 기업, 순자산 1억달러 초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

  버몬주 : 연간보험료가 2만 5천달러이상, 25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 고용하는 기업

3. 설립절차

- 감독관에게 정관을 제출,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2명 이상 이사(버몬트 1명)는 본주의 거주자이어야 함, 정관의 승인은 이사정원의 1/3이상이 승인되어야 함
- 버몬트 주 : 정관과 기초서류를 제출, 인적, 물적, 사업계획건전성요건을 필요

Ⅳ-2.2 미국 주요 규제 : 버몬트, 뉴욕주

4. 자본금 요건

- 뉴욕,버몬트 (주식회사, 상호회사 동일) : 순수캡티브 25만달러, 그룹캡티브 50만달러 (뉴욕주 일반손보사 1,150만달러)
- 버몬트주의 경우 최저자본금 또는 잉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장으로 예치 요구

5. 인수보험

- 뉴욕주 : 손해보험회사로만 가능하고, 모기지, 권원보험, 금융보증을 제외한 모든 기업성 재물특종보험(commercial property and casualty lines), 제3자배상책임(WC/EL)은 금지
- 버몬트주 : 개인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은 인수 금지, 법정 산재초과담보는 제공가능

6. 재보험

- 뉴욕주 : 모기업의 관련된 위험에 한정하여 수재, 모기업 이외의 재보험은 연간보험료의 50%이내에서 가능

Ⅳ-2.2 미국 주요 규제 : 버몬트, 뉴욕주

7. 사업중의 규제

- 연차보고서를 매년 3월 1일 이전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의 확인선서를 받아 제출, 매년 7월 1일 이전에 연말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재정상황보고서와 피보험 사업체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
- 주보험감독관은 매년 9월 1일 까지 상하원 의장에게 캡티브보험상태 보고, 5년에 1회 검사 실시
- 투자제한 : 순수캡티브는 모기업에 대한 대출을 승인받아 가능하나 자본금 및 잉여금 대출은 불가(승인필요), 그룹캡티브는 불가
- 약관 및 요율규제 : 없음
- 계약자보증기구 및 공동인수풀 참여 : 없음

8. 수수료

- 버몬트주 : 설립신청시 500달러, 매년 면허갱신심사료로 500달러 납부

9. 면허취소

-납입자본금 또는 잉여금이 결손 또는 파산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Ⅳ-2.2 미국 주요 규제 : 버몬트, 뉴욕주

9.보험료세(버몬트주)

- 원수보험료와 재보험료로 나누어 연 1회 징수(연간 최저 7,500달러, 최고 20만 달러)
- 캡티브보험 감독기금 : 보험료세의 11%를 적립

[버몬트주 보험료 세율]

보험료구간	원수보험료 세	재보험료 세
2000만달러까지	0.038%	0.214%
2000만-4000만	0.285%	0.143%
4000만-6000만	0.019%	0.048%
6000만달러 초과	0.072%	0.024%

자료 : The Vermont Statues Title 8 : Banking and Insurance 제6014조

V 결론 및 시사점

보험업 발전 견인

다양화 진입규제 마련

국내 보험업 중심 정책

Ⅴ.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업 진입다양화 관련 규제 마련**

- 보험업법 제정 이후 보험회사 중심의 리스크전가체제의 지속으로 인한 보험시장 문제점(해외의존도, 가계성보험중심, 글로벌보유경쟁력 미약)을 극복

→ 소규모보험회사, 캡티브 등 대체적인 리스크 전가시장 마련, 관련법규를 마련(특수보험업 별도 정의, 설립허가요건, 건전성규제 범위, 영업종목제한 등)

- 진입시 자본금요건은 8,90년대 부실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준으로 증액했으나, 현재는 RBC규제, RAAS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글로벌 수준으로의 조정할 필요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내 보험회사의 납입자본금 수준 비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한국</th><th>미국(뉴욕주)</th><th>독일</th><th>일본</th></tr>
<tr><td colspan="2">인가종목</td><td>11개 종목</td><td>31개 종목</td><td>25개 종목</td><td>손해보험, 생명보험</td></tr>
<tr><td rowspan="2">자본금기금</td><td>주식회사</td><td rowspan="2">-종목별 적용하 되 최 대 300억원</td><td>-생보: 자본금 250만달러 잉여금 425만달러 (전종목)
-손보: 자본금 1,160만달러, 잉여금 630만달러(전종목)</td><td>-생보: 300만유로
-손보: 300만유로(전 종목영위시)</td><td rowspan="2">- 10억엔 이상
-소액단기보험업 0.1억엔</td></tr>
<tr><td>상호회사</td><td>-생보: 자본금 65만달러 잉여금 20만달러
-손보:자본금 935만달러 잉여금 600만달러</td><td>주식회사의 1/4</td></tr>
<tr><td rowspan="2">수준</td><td>생보</td><td rowspan="2">1,371 배</td><td>143 배</td><td rowspan="2">69 배</td><td rowspan="2">308 배(소액업 3배)</td></tr>
<tr><td>손보</td><td>380 배</td></tr>
</table>

주 : 1) 자본금 수준은 주식회사 자본금/GNI(2010년)
2) 미국 캡티브 자본금은 순수캡티브 25만달러, 그룹캡티브 50만달러

Ⅴ.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업 정책 일관성 확보, 국내 보험업 중심 전환**

- 기본 보험회사보다 더 많이 운영되는 공제기관 등에 대해 보험업으로 규정하는 국가적 정리가 필요하고, 보험업에 일관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시장실패영역을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제도(cross border, 재보험자 협의요율)는 국내 보험시장의 위상에 맞게 보완할 시점

*국경간보험제도 : 국내시장에서 3회이상 거절, 국내 보험상품없는 경우

*재보험자협의요율 : 4. 참조순보험요율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5. 종합보험중 참조순보험요율 없는 보험계약

6. 국내 보험통계 등 부족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

Ⅴ.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보험업의 질적 발전 및 글로벌 진출 경쟁력 확보**

-보험업의 전체적인 리스크관리자 역할이 정립되는 경우 국내 보유자산도 증가하고 손해보험의 상품혁신 등의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글로벌 진출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